

채무불이행 안정 안 되면 도급계약 해제 안돼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Q. 건축물설계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甲건축사무소는 乙주택개발장비사업 조합과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용역이 수행되던 중 乙조합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甲은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므로, 乙의 해제통보가 부적법하다면서, 乙을 상대로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乙의 해제가 부적법하다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용역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A. 위 사건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의사에 임의해제의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도급인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이 있다(민법 제673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나, 대체로 구체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단순히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사건에서 甲과 乙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도급계약도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따라서 乙조합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통보를 했으나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렇다고 해 민법 제673조에 기해 용역계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그러나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임의해제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해 버리면, 도급인으로서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거꾸로 자신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은, 도급인의 의사 및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바른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가이드라인 일 뿐



기지수첩
원승일 (정책사회부)

“작업 전 안전교육 한다며 서류로 주는데, 그걸 보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물 먹고 화장실 다녀오기도 빠듯한데.”

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회사와 노동자 자율로 위험성평가를 한다는 고용노동부 로드맵에 대해 묻자 한 노동자는 귀찮듯이 답했다.

실제 여력 있는 대기업들마저 서류 작업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한다. 그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에만 몰두한다. 여력없는 영세 기업은 안전 교육할 시간도 빠듯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아직 기업들은 자율보다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돈 쓰

는 일로 치부한다. 노사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위험성 평가’가 그렇듯해 보이지만 실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이유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노사가 작업 현장에서 일일이 위험 요소들을 찾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는 제3자인 안전보건관리 감독자가 주재한다. 보다 현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 엄격한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감독자에게 명령 권한이 없다. 노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한국노총은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노동자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성 강화는 단순한 가이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노동부 장관이었던 알프레드 로벤스가 1972년에 쓴 ‘로벤스 보고서’ 발표 후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한계가 있어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200여 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대폭 수용한 영국 정부의 결단도 있었지만 중심에는 더 이상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노사 주체들의 책임과 개혁 의식이 있었다.

자율에는 책임과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노사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안전관리를 비용이나 투자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도, SPC 제빵공장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여성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내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안전관리에 공동 책임을 질 때 중대재해 감축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가이드라인 일 뿐이다.

/w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1월 1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하던 일이 성과를 내서 이익이 늘어난다. 48년생 밝은 희망이 다시 일어나게 한다. 60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72년생 신용 있는 사람을 믿는 것도 자신이다. 84년생 일할 때 머리만 민지 말고 조금 더 노력을.



37년생 초대는 감사하나 지출이 과하다. 49년생 과감한 투자는 손실로 이어진다. 6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즐거운 날. 73년생 장미가 만발하니 향에 취해 행동 실수를 한다. 8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38년생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 50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2년생 지금까지라도 노후를 준비해야. 74년생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86년생 도와주는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39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먹는 것을 조심. 51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6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75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87년생 계획을 세워야 하니 결과부터 챙기지 마라.



40년생 숨겨왔던 숨겨진 마음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52년생 신세를 진이에게 다시 은혜를 갚는 날. 64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데. 76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8년생 비바람이 몰아치니 외출을 자제해야.



41년생 안목을 넓히고 고집을 피우지 마라. 53년생 화려한 무지개를 바라만 본다. 65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따르겠다. 77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89년생 기다리던 문서일수록 다시 살펴보라.



42년생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54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배우고 대. 66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78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90년생 가장 우선순위는 가족에게 두어야 할 텐데.



43년생 일이 미루어지지 마음이 조금. 55년생 자식의 도움을 고맙게 여겨라. 67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은 독이 된다. 79년생 업무에 빠다 보니 기본 좋은 일일 생김다. 91년생 이직보다는 흔들림 없이 지내야 발전이 있다.



44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다. 56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팔듯하나 자중할 때. 68년생 나를 스스로 응원하고 주변을 사랑하자. 80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92년생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해서 일을 그르친다.



45년생 이제라도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 57년생 물려주신 조상님 땅의 소중함을 느낀다. 69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저라. 81년생 마음이 혼란할 때는 산책을 하며 정리. 93년생 항상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해야.



46년생 된다고 된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58년생 매대는 인맥을 통한 정보수집이 수월하다. 70년생 빛나는 창의력으로 주목을 받는다. 82년생 귀인을 만나서 학업에 열중하게 된다. 94년생 종일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47년생 상대방 시시비비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9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없다. 71년생 목표가 높아 보여도 용기를 내자. 83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리다 없다. 95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많이 모이는 법이기에.

김상회의四季

부적의 효과



미신이라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적의 이런 저런 방편들의 효험은 마음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 약을 복용할 때도 플라시보 효과가 증명되었듯이 부적 역시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솔직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을 불러오기 위해 귀신이라 칭할진대 혼이 무엇인가. 육신만 없는 마음을 혼이라 이르는 것이다. 부적이라 하면 창고지와 같은 한지에 경면주사로 섬뜩한 형상이나 기호를 그려 넣어 싹된 기운이 범접치 못하게 하거나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형상이나 글자를 그려 사람 몸에 지니거나 그와 동등한 효험을 내게 하는 위치에 두는 것을 뜻한다.

경면주사는 붉은 색을 내는 규소가 원재료인데 전통적으로 붉은 색은 잡귀들이 두려워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기에 부적의 필수 재료가 된다. 그러나 때때로 생각해 보자면 부적을 일반화하는 사례들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삼재가 들었다 하여 너도나도 삼두일족삼재부(三頭一足鷹三災符)를 집 벽에 붙이거나 몸에 지닌다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효용이 있을까? 삼두일족삼재부는 머리 셋에 다리는 하나인 매로서 세 개의 부리를 가지고 있다. 맹조류에 속하는 매의 강한 부리 그것도 완벽한 수인 세 개의 부리로 삼재 흉악을 쫓아 없앤다는 바램을 형상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보편적인 집단인식 또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위안을 준다. 사람이 봐서 무서워하면 혼 역시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주가 되므로 역시 같이 두려워한다고 보는 게 합당한 추론이다. 인간사 여러 근심들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방편 부적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바이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을 두고 부적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미용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95 | 10,000원

	1	9	8	5	7	
7	8	3		2	6	1
4	6			2	9	
8			1		6	
9	7			5	4	
3	9	6		4	1	5
	5	8	9	3	4	

5	3	7				
	9			3		5
6				9		1
3			8			5 4
	7	4				6 9
						7
	5				1	4
			9	4		6 8
		8	3	6		5

정답

1	9	7	8	6	8	9	2	1
8	8	6	1	2	9	7	1	9
9	2	1	7	1	9	6	8	8
7	8	9	9	8	2	1	1	6
9	1	8	6	1	7	2	9	8
6	1	2	8	9	1	9	8	7
1	9	9	2	7	8	8	6	1
2	6	8	1	9	1	8	7	9
8	7	1	9	8	6	1	9	2

9	6	1	1	9	8	8	7	7
2	8	9	9	7	6	1	8	1
1	7	8	1	8	2	9	9	6
8	1	1	6	2	7	9	9	8
6	9	8	8	9	1	7	1	2
7	9	2	9	1	8	6	1	8
1	8	7	2	6	9	1	8	9
8	1	9	7	8	9	2	6	1
9	2	6	8	1	1	8	7	9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0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18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